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. 11. 28 선고 2024가단153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A

피 고 1. B

소송대리인 C

2. D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1. 28.

주 문

1.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에게,

가. 피고 이애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. 6. 16.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85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3. 6. 16.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나.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. 12. 20.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259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5. 12. 20.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판결)

판사 김용찬

별지